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198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  
교육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황철규 의원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수정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철규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하여,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(지원)체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.
- 조례 명칭을 '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'에서 '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'으로 변경하여 사업 목적과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의(안 제2조 제2항)
- 다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(안 제4조)
- 라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(안 제5조 제2항)
- 마. 명칭 변경(안 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황철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98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 사업이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 검토

-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는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 사업이나 ‘미래교육’이란 용어가 디지털·AI 교

육 사업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, 동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과 연계된 교육사업을 추진함을 사업명이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 동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협의체 구성·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자치구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<sup>1)</sup>,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협력 이외에도 광역단위(서울특별시교육청 - 서울시) 및 학교단위(학교-구청 등)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<sup>2)</sup>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명을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에서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여 동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인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한편 조례 제명이 변경될 경우, 조문 내용에 포함된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라는 용어도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되어야 하는바, 조문에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가 포함된 안 제1조(조문), 안 제2조(제1호, 제2호) 안 제3조(제1항, 제2항) 안 제4조(조항명 및 각호를 제외한 조문), 안 제5조(조항명,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), 안 제6조(조항명, 제1항, 제2항제1호, 제2항제2호, 제2항제3호, 제2항제4호), 안 제7조(조항명 및 조문, 각 호), 안 제10조(제1항~제3항), 안 제11조(조문)에서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를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.

---

1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).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협의체 구성·운영 계획(안).

2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10.). (가칭) 서울교육협력특구 명칭 변경 계획(안)(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보고자료)

## 나. 안 제2조제2호(미래교육지구 사업 정의)에 대한 검토

- 안 제2조제2호는 ‘미래교육지구’를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 이외 ‘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’을 ‘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’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‘2025~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’에 따르면 종전까지 추진해온 ‘서울미래교육지구’는 지역연계교육 과정과 청소년 돌봄 및 방과후,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이 주요 내용이었으나, 2026년부터 추진되는 ‘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’는 지역 특색사업의 운영과 학교-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 강화, 그리고 학생 맞춤통합지원이 주요사항인바,

안 제2조제2호는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를 별도 정의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[표-1] 서울미래교육지구 추진 방향<sup>3)</sup>



3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2.). 2025~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.

#### 다. 안 제4조(미래교육지구 사업 정의)에 대한 검토

- 안 제4조는 ‘미래교육지구’를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 이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 호(제1호~제4호)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각 호로 규정된 동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‘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(제1호)’, ‘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(제2호)’, ‘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·청소년지원(제3호)’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, ‘지역연계·협력강화’, ‘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·지원’, ‘지역 연계 학생 성장지원 체계 구축·운영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,  
안 제4조제1호~제3호는 각각 동 사업 중점 과제에 따른 세부추진내용인바, 안 제4조제1호~제3호는 동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  - 그리고 안 제4조제4호는 중복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[표-2] 서울미래교육지구 중점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<sup>4)</sup>

중점 과제	세부 추진 내용
지역연계·협력 강화	1-1.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학교-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1-2. 지역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운영 지원
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·지원	2-1.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-2.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·지원
지역연계 학생성장지원체계 구축·운영	3-1. 지역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3-2. 지역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·지원

## 라. 안 제5조(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)에 대한 검토

- 안 제5조제1항은 ‘자치구를’ 을 ‘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’로 변경하며, 안 제5조제2항은 지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매년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‘(가칭)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계획안’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자치구와의 협약 체결 이후 교육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협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는바<sup>5)</sup>,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5조2항을 개정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 마. 안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에 대한 검토

-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기존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(제2항)과 위촉직 위원(제3항)으로 구분하면서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규정하고, 위촉직 위원(제3항)은 ‘교육지원청 및 자치구’ 소속 공무원을 국장급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하며(제1호), 위촉위원 중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(제3호)’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 안 제8조제4항은 기존 ‘민간위원’을 ‘위원’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5항은 ‘미래교육지구’를 ‘교육협력특화지구’로 변경하는 것 이외 간사를 사업 담당 ‘과장’에서 ‘장학관 또는 사무관’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먼저 안 제8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부교육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개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

4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2.). 2025~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.

5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(2025.10.). 「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」 업무협약 계획(안).

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음으로 안 제8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중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(제3호)’을 추가한 것은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교원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아울러 기존 ‘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’을 ‘교육 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’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되는 반면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책 결정에 있어 연계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는바, 직급 요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연계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또한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서 기존 ‘외부전문가’를 ‘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’로 변경한 것은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외부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다만,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“교육감이 위촉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안 제8조제3항제1호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, 안 제8조제3항제3호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,

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“위촉” 하는 것이 아니라 “임명” 하여야 하므로<sup>6)</sup> 안 제8조제3항의 “교육감이 위촉”은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한편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--

6) 법제처(2022.8.).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. 223페이지.

- 이는 기존 ‘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’ 가 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위원들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동 위원회가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한 적정 비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- 다음으로 안 제8조제4항은 ‘민간위원’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‘민간위원’ 을 ‘위원’ 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기존 ‘민간위원’ 이외 당연직 위원 등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인바,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가 해당 직 재직기간과 연계되므로 민간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없으나 동 조항에 단서조항(‘다만,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’)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‘민간위원’ 을 ‘위원’ 으로 변경해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5항은 간사를 사업 담당 ‘과장’ 에서 사업 담당 ‘장학관 또는 사무관’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당연직 위원에 부서장이 규정됨에 따라 팀장급인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위원회 운영 실무를 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
## 바. 기타

- 그 외 안 제3조에서 ‘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’ 을 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’ 로 변경, 안 제5조제5항의 ‘해지 할’ 을 ‘해지할’ 로 변경,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‘지도 · 점검’ 을 ‘지원 체계’

로 변경, 안 제11조에서 ‘대학 및 기업 등’ 을 ‘지역기관, 대학 및 기업 등’ 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동 조례 사업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고 조문 오기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.
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3602., 2025.10. 30.)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#### V. 토론요지 : 없음.

#### VI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 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 으로 수정함.

#### 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#### 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#### 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9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  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“교육감이 위촉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“위촉”하는 것이 아니라 “임명”하여야 하며,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,  
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으로 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 중 “교육감이 위촉” 을 “교육감이 임명 · 위촉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<신설> ④ ~ ⑤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<u>위촉</u>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④ ~ ⑤ (현행과 같음)	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<u>임명</u> · <u>위촉</u>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  
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자치구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, “서울미래교육지구”를  
“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미래교육지구”(이하 “미래교육지구”)를  
“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”(이하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)로, “미래교  
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미래교육지구”  
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  
로, “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”을  
“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·청  
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시책을 마  
련하고 추진하도록”을 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 
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”를 “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

사업의 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
2. 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
3.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·청소년 지원

제5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)”을 “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“를”을 “와 협약을 체결하여”로, 같은 조 제2항 “2”를 “1”로, “지정 2년차에는 종합”을 “매년”으로, 같은 조 제1항, 제2항 및 제4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미래교육지구 사업”을 “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”으로, “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”로, “해지 할”을 “해지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)”을 “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호 중 “및 단계별 추진 계획”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“지도·점검”을 “지원 체계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서울교육

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민간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과장”을 “장학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1.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
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
3.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
4. 그 밖에 교육협력특구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사회 및 교육 전문가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각각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”를 “교육 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”로, “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와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”로, “자치구별 계획”을

“교육협력특화지구별 운영계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미래교육지구”를 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로, “대학 및 기업 등”을 “지역기관, 대학 및 기업 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교육청     서울미래교육지구  <u>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	<p>서울특별시교육청    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 <u>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<u>자치구</u>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<u>서울미래교육지구</u>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서울미래교육지구”</u> (이하 “<u>미래교육지구</u>”라 한다)란 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“<u>교육감</u>”이라 한다)이 <u>미래교육지구</u>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.</p> <p>2. <u>“미래교육지구 사업”</u> 이란 교육감이 <u>미래교육지구</u>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<u>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</u>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--- <u>지방자치단체</u>-----  <u>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 -----  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 -----.</p> <p>1. <u>“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”</u> (이하 “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”-----) -----  -----  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사업을 -----  -----.</p> <p>2. <u>“교육협력특화지구”</u> -----  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-----  ----- <u>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 역</u></p>

	<p><u>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</u> ---</p>
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교육감은 <u>미래 교육지구</u>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<u>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</u>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<u>미래교육지구</u> 사업이 「교육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----- <u>기반을 조성하기 위해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<u>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</u>) <u>미래 교육지구</u>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4조(<u>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</u>)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-----.</p>
<p>〈신 설〉</p>	<p>1. <u>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</u></p>
<p>〈신 설〉</p>	<p>2. <u>어린이 · 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</u></p>
<p>〈신 설〉</p>	<p>3. <u>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 · 청소년 지원</u></p>
<p>1. <u>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</u></p> <p>2. <u>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</u></p> <p>3. <u>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</u></p> <p>4. 그 밖에 <u>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4. ----- <u>교육감</u>-----</p>
<p>제5조(<u>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</u>)</p>	<p>제5조(<u>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</u>)</p>

등)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③ (생 략)

④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.

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·지원할 수 있으며,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및 운영) ①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 
-----와 협약을 체결하여 -----  
-----.

②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1-----  
----- 매년 -----  
-----.

### ③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사업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운영위원회 -----  
회 ----- 해지 할 -----  
-----.

⑥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제6조(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

## 제6조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)

립)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1.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

## 2.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### 3. 미래교육지구 지정 · 평가 및 지도 · 점검에 관한 사항

#### 4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 한 사항

제7조(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1.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
## 2.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

### 3.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수립) ①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\_\_\_\_\_  
\_\_\_\_\_.

## 1.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----- -----.

## 2.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-----

### 3.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지원 체계 -----

## 4. -----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 -----

제7조(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  
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  
----- -----  
----- ----- 교육협력특화  
지구 -----  
-----  
-----.

## 1.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-----

## 2.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

### 3. 교육 협력 특화지구 -----

4.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

5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1.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

2.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

3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

4.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### 〈신 설〉

4.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 
-----

5.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-----  
-----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1.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

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

3.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

4.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과

<p>③ <u>민간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 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. 다만, 공무원 및 선출직의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교 육청 <u>미래교육지구</u> 사업 담당 <u>과장</u> 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, 임시회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0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교육감</p>	<p><u>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</u></p> <p>④ 위원----- ----- -----. -----.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 <u>교육협력특화지구</u> ----- <u>장학 관 또는 사무관</u>-----.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-----</p>
--	--

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,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## ④ (생략)

제11조(대외협력)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8832호, 2023.7.26.>

-- 교육협력특화지구--  
-----.

②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 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-----  
-----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-----  
-----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별 운영계획-----.

####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대외협력) ----- 교육협력특화지구-----지역기관, 대학 및 기업 등-----  
-----.

제12조(현행과 같음)